
2023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3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3. 11. 17.(금)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 이종수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76호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2023부패104호) 조사 결과보고서 ○ 2023-77호 : (예방과-5057) 화재발생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아만티호텔) ○ 2023-78호 : (현장대응단-2615) 20210313-056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서교동 아만티호텔)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76호 : 기각 ○ 2023-77호 : 각하 ○ 2023-78호 : 각하

1. [의안번호 2023-76]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2023부패104호) 조사 결과보고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3-76호 조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 000 주무관

조사보고서 자체는 저희가 공개한 적은 없고요.

대신에 간혹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했을 때 행정상 처분요구서를 가려서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한데요. 그 경우에도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신분상 조치들이 동반되는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공개하게 되면 이 신분상 조치를 누가 받았는지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조사보고서를 역대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요구서를 가려서 공개한 적은 있지만 저희 내부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어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처분결과는 일정 부분 공개를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 000 주무관

행정상 처분에 한해서 공개한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처분이 없는 경우예요.

○ 000 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의신청인,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상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해달라고 하셨고,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업무상 연관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또는 관리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삭제를 하고 공개를 했을 때에는 이 특정인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 000 주무관

그러니까 저희가 총평이라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서 신분상 조치를 했다라고까지만 저희가 답변 형식으로 공개를 했고, 이 내부보고서 자체는 읽다 보면 다른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신분상 조치와 관련된 거는 역대로 저희가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6호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관련된 부분으로 비공개를 요청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000 위원

이거 징계와 관련된 거니까 사생활 보호도 추가를 하지만 이거 징계와 관련된 인사관리에 넣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를 가리고라도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사관리라고 하면 굳이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 비공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5호는 추가하는 거는 어떠신가요?

○ 000 주무관

5호가 인사관리에 해당되는지는 잘 몰랐고요.

○ 000 위원

인사관리에서 징계와 관련된 인사관리니까 이 5호를 추가해서 인적사항을 비공개하

더라도 이게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는 싶어할 것 같아요.

조사경위나 개요는 적어도 공익신고자한테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 대신에 이 세부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까지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 000 위원

그저는 당연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다 가려도 되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직원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 가리고요. 실시개요, 권익위 의견, 조사 내용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알려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지금까지 비공개를 해 오셨다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일단 저희 여태까지는 조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처분요구를 할 때 그 보고서를 보통 제출해요. 공개를 할 때 저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따른 처분결과서를.

○ 000 위원

그런데 이거는 처분이라는 게 딱히 없지 않나요? 담당자만 징계조치를 한 거고, 그 징계 조치가 처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원래 징계도 다 처분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사실 구청 조사결과보고서인데 구청에서는 주의장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 000 위원

그러면 처분결과는 이게 징계다 보니까 그거는 비공개고, 이 감사결과보고서 자체도 지금

까지 나간 적이 없으니까 비공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저희들끼리 조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입장하셔서 결과 통지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저는 5호 인사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6호 개인의 신분상 사생활 관련된 부분
해서 저는 5호, 6호에 따라서 기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공개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까지 관례가 비공개라고 하니
까 일단 비공개를 하고요.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 관
례가 되면 그때 공개하는 결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5호, 6호에 따라서 비공개 기각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와 6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의견
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6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3-77] : (예방과-5057) 화재발생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아만티호텔)

3. [의안번호 2023-78] : (현장대응단-2615) 20210313-056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서교동 아만티호텔)

○ 000 위원장

두 번째 안건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7호, 제2023-78호 마포소방서 예방과,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유사안건이므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쭙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청구인이 호텔숙박객이었는데 당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77호는 결과보고 이 한 장짜리 서면을 전부
비공개하신 거고, 78호는 종합보고서에 노란색 부분 외에는 부분공개를 하신 게 맞는
거지요?

○ 000 조사관

청구인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화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에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77호에도 결과보고에 이 별표 처리되어 있는 부분 말고는 공개가 된 건가요?

○ 000 소방위

77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하고 개인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처리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요지는 본인이 여기에 부상자에 빠져 있다고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신 걸로 보면 될까요?

○ 000 조사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같이 주신 자료에 당시에 언론보도나 구급일지를 보면 이분도 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결과보고에는 부상자가 화상 입으신 관리인 한 명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 000 조사관

현재 저희 소방의 화재조사보고 규정에 의하면 사상자를 중상자와 경상자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경상자가 중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경상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단순 연기흡입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요. 그 당시에 청구인분이 스스로 자기의 주 호소증상이 연기 흡입을 하였다, 그리고 구급대가 청구인분의 생체징후를 확인했을 때 의식이나 호흡, 맥박 등이 양호하였고, 그래서 주 호소증상과 청구인분의 생체징후가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연기흡입자로 판단해서 무전이 나왔고, 저희 조사팀이나 지휘팀에서도 단순 연기흡입자로 현장에서 판단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보상을 받거나 그런 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지요?

○ 000 조사관

저희가 민사상 보험사에서 과실률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는데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 보고서 한 건에 대한 부상자 판단보다 이번에 저희가 처리한 것처럼 구급활동일지나 저희가 상황보고서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 단순 연기흡입자 이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건들로도 증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여쭙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

별도 질의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별도의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토론 이후에 결정할 때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000 위원장

주심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청구인의 이의신청 취지 자체가 본인이 부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본인이 빠진 사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인데요. 이게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77호, 제78호 두 건 다 저는 각하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저도 두 건 다 각하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정보공개청구는 생성된, 이미 기 확정된 어떤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투는 거지 어떤 정보의 변경 및 수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각하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각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두 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의안번호 제2023-77호, 제78호 이의신청건을 각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7호, 의안번호 제2023-78호는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